서울과학기술대학교 ST나눔공헌단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ST나눔공헌단), 02-970-6043

제정 2012. 3. 1.

개정 2012. 10. 9.

전부개정 2019. 9.30.

일부개정 2021. 8. 31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18조에 의거 국가와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고 성실, 창의 그리고 협동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T나눔공헌단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.
- 제1조의2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"사회봉사활동"이란 국가와 사회 이익을 위해 계획·운영·관리되는 대학 내 활동에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여 공익성·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2조(기능)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T나눔공헌단(이하 "공헌단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국내외 대외 봉사기관 및 단체의 관리와 섭외 활동
 - 2.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봉사활동 계획 수립
 - 3. 사회봉사와 관련된 정보제공

- 4. 사회봉사활동의 평가
- 5. 사회봉사와 관련된 교육 및 조사연구
- 6. 사회봉사와 관련된 홍보활동
- 7. 학내 구성원의 사회봉사활동 지원
- 8. 그 밖에 사회봉사활동에 관련된 사항
- 제3조(조직) ① 공헌단에는 ST나눔공헌단장(이하 "단장"이라 한다) 1명과 부단장 1명을 두며, 단장은 학생처장이, 부단장은 학생부처장이 겸임한다.
 - ② 공헌단에는 적정 인원의 직원을 두되, 학생지원과 소속 직원을 겸직시킬 수 있다.
- 제4조(운영위원회) ① 공헌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단장과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사무국장, 부단장을 당연 직 위원으로서 그 밖의 위원은 공헌단의 활동에 적극 참여를 희망하는 교 수, 직원, 학생 각 2명으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그밖의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.
 -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하되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-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제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,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.
 - ⑥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 위원장은 당연

직 위원 중 관련 부서장이 되고, 해당 분과의 봉사활동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- 1. 교수분과 : 교수의 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
- 2. 직원분과 : 직원의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
- 3. 학생분과 : 학생의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

제5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공헌단의 기본운영계획
- 2. 공헌단의 사업 계획
- 3. 공헌단 규정의 개정, 폐지
- 4.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봉사기관의 선정
- 5. 그 밖에 공헌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제6조(구성 및 가입) ① 공헌단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, 직원 및 재학생 중에서 공헌단에 가입한 사람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2. 10. 9.>
 - ② 공헌단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ST나눔공헌단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0. 9.>
 - ③ 봉사활동 수강 신청한 학생 및 공헌단 프로그램 참가자는 공헌단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.
- 제7조(봉사활동) ① 공헌단에 가입한 교원 및 직원은 대학에서 계획, 운영 또는 관리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, 필요시에는 지도교수 및 지도 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.
 - ② 공헌단에 가입한 학생들은 단장이 임명한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의 지도하에 봉사활동을 실시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공헌단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하

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제8조(봉사활동의 영역) 사회봉사 활동의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- 1. 국내: 지역사회 기여 공헌 활동,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봉사 활동 등. 단, 종교단체는 제외하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활동은 인정
 - 2. 국외: 해외봉사활동 등
- 제9조(봉사 대상기관 선정) ① 사회봉사 대상기관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.
 - 1. 순수 비영리 복지 기관 및 단체(1365 또는 VMS 등록된 정부 인증기관)
 - 2. 교육부 지정기관(한국과학창의재단, 한국장학재단)이 인증한 대학생의 교육기부활동(무료 봉사)
 - 3. 삭제
 - 4.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기관
 - 5.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 - 1. 각종 종교, 정치 및 영리단체 내의 봉사활동
 - 2. 소속 학부(과)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
 - 3. 봉사활동의 대가로 일정액의 급여(장학금은 제외한다)를 받는 경우 <개 정 2012. 10. 9.>
- 제10조(봉사활동 교과목) ① 봉사활동을 희망하여 봉사활동 교과목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수하고자 하는 학기에 개설된 봉사활동 교과목

- 을 수강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한다.
- ② 이수 구분은 교양 선택으로 한다.
- ③ 신청 학점은 학기당 1학점이며, 수강신청 제한 학점과 상관없이 신청할수 있다.
- ④ 봉사활동 기간은 계절학기를 포함한 각 학기 단위로 하며,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각 학기 내에 소정 시간의 봉사활동을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봉사활동 시간은 학기별로 사전교육 2시간 이상, 실습(봉사활동) 30시간 이상, 총 32시간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12. 10. 9.>
- ⑥ 봉사활동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회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봉사활동은 해당기관 자체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0. 9.>
- 제11조(봉사활동 신청) ① 공헌단에 가입한 후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사회봉사활동 계획서를 기간 내에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사회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- 제12조(봉사 대상기관 배정) 봉사 대상기관 배정은 지원자가 신청한 기관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소수의 봉사 대상기관에 신청이 편중될 경우에는 공헌단에서 재배정할 수 있다.
- 제13조(사전교육) ① 공헌단에서는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위하여 사전교육을 학기 초마다 실시하며, 신청자는 사전교육 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사전교육은 2시간으로 하며, 봉사활동 시간에 포함한다.
 - ③ 사전교육은 교육 자료를 이용한 서면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.

- 제14조(지도교수) 지도교수는 단장, 부단장 또는 전공이 사회봉사와 인접하 거나 사회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자원한 교수로 선정하며,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한다.
 - 1. 사회봉사 교과목 1학점을 담당하며 성적 부여
 - 2. 봉사활동 지원자 대상 교육 진행
 - 3. 봉사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, 봉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에 대해 기관 대표 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
 - 4.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봉사 대상기관 신규 개발
- 제15조(성적처리) ① 봉사활동을 완료한 학생지원자는 봉사활동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봉사활동 확인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봉사활동 보고서 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동행, 한국과학창의재단, 한국장학재 단이 인증한 봉사활동은 총 봉사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기관 서식 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갈음할 수 있다.
 - ② 봉사활동을 이수하면 각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학점을 P로 처리하고, 단위 기간 내에 봉사활동을 이수하지 못하면 F로 처리한다.
 - ③ 학점은 학기당 1학점이며, 졸업 이수 학점으로 최대 2학점(Pass)을 인정하고 평점 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.(※ 봉사활동 성적 F 처리 시 성적장학금 수혜 불가.)
 - ④ 지도교수는 봉사활동 종료 후 성적 제출기한 내에 성적을 교무처로 송 부한다.
- 제16조(인증서 발급)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이 발급한다.
- 제17조(활동 장려) ① 단장은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본교의 명예와 위상을

드높인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해 포상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우수봉사자 추천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우수봉사자 추천서에 의한다.
- ③ 봉사활동의 결과는 분과별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각종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18조(세부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(제23호, 2012. 3. 1.)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144호, 2012. 10. 9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491호, 2019. 9. 30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629호, 2021. 8. 3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ST나눔공헌단 가입신청서										
소	속				구 분	교수() 직원() 학생()				
0]	름			생년월일			성별	남()	여()	
주	소					E-메일				
전	화	()	-	핸드	폰 번호				
상기 본인은 참다운 인간정신의 구현과 사회봉사활동 실천을 위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T나눔공헌단 가입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							라 여			
	신청자 (서명)									
	서울과학기술대학교 ST나눔공헌단장 귀하									

[별지 제2호서식]

봉사활동 계획서								
학부(과・전공) 학 년								
성	명			학 번			휴대전화	
e - mai	i1			<u>I</u>				
봉 사 활	동	기관명					연락처	
7]	관	주 소						
지 원 동	기							
및								
목	적 기이	보기르 차	പ്രിപ	्रा० ग्र	記り ス /	► ►귀 ¬ ℷ	나시키 하도?	하 귀ㅇ 뭐야하니다.
							성열이 활동 수 있도록	할 것을 서약합니다 노려하다
								키지 않는다
,		, -		•		- ,		기 책임을 진다
4. 본교 및	! 봉	사활동기관	: 담당>	자의 안내	및 조정	성에 적=	수 협조한다	
				20 년	월	일		
		학 생	성 명			(서	명 또는 인)
※ 본란은	- 봉시	사기관 담당	강자가	작성하여	주시기	바랍니다	7	
본	· 기된	반은 위 학	생의 20	0 학년도	. ()학기 지	-원봉사활동	을 승인함
봉사기간		20	•		~		20 .	
봉사종류								
20 년 월 일								
담당자(직·성명) : (인)								
기 관 장 : (인)								
서울과학기술대학교 ST나눔공헌단장 귀하								

[별지 제3호서식]

봉사활동 확인서

■ 학생 작성란

학부(과·전공)		학 년	
성 명	학 번	휴대전화	

■ 봉사기관 작성란

[봉사활동 내용]

순번	월/일	활동시간	주요활동내용	순번	월/일	활동시간	주요활동내용
1		()시간		8		()시간	
2		()시간		9		()시간	
3		()시간		10		()시간	
4		()시간		11		()시간	
5		()시간		12		()시간	
6		()시간		13		()시간	
7		()시간				총 () 시간

[봉사활동 평가]

퍼 기 기 Q	A+	A	В	С	F		
평가 내용	(최우수)	(우수)	(보통)	(미흡)	(기대이하)		
봉사학생이 성실하고 근면하게 활동하였음							
봉사학생이 봉사수혜자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였음							
봉사학생이 봉사기관의 업무규칙을 준수하였음							
※ 위의 3개 평가 내용 중 1개 이상이 F일 경우는 성적 미취득으로 평가 처리됩니다.							
※ 평가자 의견(우수봉사자인 경우 추천서 첨부) :							

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.

년 월 일

기 관 장 : (인)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ST나눔공헌단장 귀하

[별지 제4호서식]

봉사활동 보고서							
학부 (과·전공)		학 년					
성 명	학 번	휴대전화					
e - mail							
0 1 2 0	기관명	연락처					
기 관	주 소						
	< 본인이 봉사활동 후 느낀 점 등	소감을 기술한다 >					

우수봉사자추천서

학년도 학기

추천 (기관 두		무 :			성 명 :		(인)
추 천	성 명			학 병	헌		
대상자	전공(학과)				·		
	기 관 명						
	프로그램명						
사 회 봉 사 활 동	봉 사 활 동 내 용						
	활동기간	년	월	일 ~	년	월	일
	봉사시간	총	시간				
추 천 사 유							

위 학생을 우수봉사자로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기 관 명 :

(직인)

유의사항:

- 1. 추천내용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
- 2. 졸업자, 휴학자는 지급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3. 가족, 친·인척 등 특수 관계에 의한 추천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.